

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2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5월 25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는 시정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,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」 제57조에 의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
- 나.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서울특별시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운영(사무위탁)
- 나. 위탁기간 : 2022. 10. 11. ~ 2024. 6. 30.
- 다. 소재지 :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, 공유동(15동) 6층
- 라. 운영인력 : 7명
- 마. 소요예산 : 금578백만원('22년 예산)
- 인건비 358백만원, 운영비 110백만원, 사업비 110백만원
- 바. 수탁기간 선정방법 : 재위탁(공개모집)
- ※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2022. 5. 12.)

사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2조, 제43조, 제44조
-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57조

○ 추진 필요성

- 최근 심화되는 젠더갈등 및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하여,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, 자치구 활동가를 비롯한 일반시민 대상 맞춤형 성평등 교육 및 젠더갈등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이 필요함
- 성평등·성인지 교육 및 사업의 성인지성 제고와 관련한 전문가 및 자치구 단위와의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운영 및 활용하여 시정의 성평등 문화 확산 정책과 연계하고 양성평등 가치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역할이 지속적으로 요구됨

아. 위탁사무

-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성평등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·성인지 교육실시 및 역량강화 사업
- 성평등 활동 단체 설립에 관한 상담 및 성장지원
- 성평등 활동 관련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
- 성평등 활동 온라인 플랫폼 구축·운영
- 성평등 활동 관련 정보의 집적·제공
-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42조, 제43조, 제44조

제42조(설치) 시장은 시민의 성평등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평등 활동 지원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3조(기능) 센터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성평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2. 시민사회 활동가를 위한 성평등·성인지 교육 실시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3. 성평등활동가의 성장 및 단체 설립·운영 지원
4. 그 밖에 성평등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4조(운영비 지원 및 정산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하여 정산·보고하여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」 제57조

제57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.

- 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나. 예산조치 : 2022년 민간위탁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유보람(☎ 2133-5057)